



“지방분해, 체중감량” ...허위·과대광고 적발

-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124건 적발
- ‘셀룰라이트 제거’, ‘노폐물 배출’, ‘부종에 도움’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체형유지,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·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, 「화장품법」을 위반*해 허위·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.

* 「화장품법」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 등의 금지)

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▲지방분해,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·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(123건, 99.2%) ▲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(1건, 0.8%) 등이 문제가 되었다.

특히 일부 제품은 ‘지방분해’, ‘셀룰라이트 제거’, ‘체지방감소’, ‘체중감량’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·효과를 표방하거나 ‘스테로이드 성분 없음*’, ‘무자극’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,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·광고 금지표현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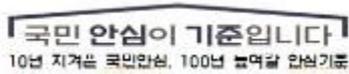
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·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*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을 의뢰하였다.

*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, 13품목

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·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,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·조치하겠다고 밝혔다.

<붙임>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·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
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고지훈 (043-719-34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원구 (043-719-3403)
담당 부서	사이버조사팀	책임자	팀 장	박영민 (043-719-1901)
		담당자	사무관	최주영 (043-719-1920)



- (의약품 오인광고) 화장품(마사지크림, 바디크림, 바디젤 등)에서 지방분해, 체지방감소, 체중감량, 셀룰라이트 제거, 노폐물배출 등을 표방

<p>의약품 오인 광고 ①</p>	<p>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크림</p> <p>★★★★★</p> <p>진짜 지방들이 타들어가는 느낌</p>  <p>후기처럼 바르고 나서 운동 병행했더니 진짜 지방들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땀이 정말 많이나요...(더보기)</p>
<p>의약품 오인 광고 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르는 고수파 - 지방질 분해 효소 - 피하지방 침투 -> 세포막 변형 -> 중성지방완화에 도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종에 도움 - 이뇨 효과 - 신진대사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내 전해질 공급 - 노폐물 분해
<p>의약품 오인 광고 ③</p>	

- (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)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(Injection) 성분, 스테로이드 성분 없이 부작용 최소화, 무자극 등 표방

